벽돌공장에서 로우더에 깔림

재 해 개 요

'14. 12월 전북 익산시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원토장에서 흙을 확인하러 이동 중 원토장으로 진입하던 로우더에 부딪힌 후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기인물(로우더)

재해발생장소

재해발생상황

○ 피재자가 원토장에 흙을 확인하러 이동 중 원토장으로 진입하던 로우더의 측면 사다리와 부딪혀 쓰러지면서 다리가 로우더 뒷바퀴에 깔림

※기인물(로우더)

- 형식 : H○7○○-3mm), - 제작년도 : 1999년도, - 버킷용량 : 3.4㎡

- 길이 8.63m, - 너비 : 3.15m, - 높이 : 3.53m, - 총중량 : 22,500kg

- 피재자가 원토장 벽체 부근에 서 있다가 로우더와 거의 동시에 원토장 안으로 이동하며 부딪힌 것으로 추정
- 로우더의 운전석 위치에서는 높이가 3.05m 정도로 로우더 측면 일부에 사각 지대가 발생함
- 로우더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는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

재해발생 원인

- 피재자는 로우더가 접근하여 부딪힐 위험이 있는 원토장으로 출입을 하였으며, 로우더 운전자는 피재자의 이동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로우더를 운전하여 원토장내로 진입함
- 로우더의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로우더가 작업현장에서 운전 중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되며,
- 다만, 근로자가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운전을 해야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